

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24. 9. 30.

행 정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경 과

의안 제399호로 2024년 9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
2024년 9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
항을 반영하고, 별표에 기재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
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(안 별표 5)
- 나. 법률명 정비(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→
「입양특례법」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 없음

라. 입법예고(2024. 8. 8.~8. 28./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, 법률명을 현행과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별표5에서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→3일로 확대함.

- 안 별표5 비고 제2호에서는 인용하고 있는 법을

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 → 「입양특례법」으로 정비¹⁾함.

○ 검토 결과

-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,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행정안전부

1)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이 2012.8.5. 전부개정(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·감독을 강화하고,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함)되어 입양특례법으로 제명이 변경됨.

는 지난 '24년 3월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「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²⁾」을 발표함.

- 이후 후속조치 등을 위하여 4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과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'24년 7월 2일 개정안이 시행된 바 있음.
- 따라서 본 안건은 상위법 별표1 중 “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

2)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

주요내용	세부내용
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후속조치	- 승진소요 연수 단축 - 근속승진 확대
저출산 대책에 따른 다자녀 공무원 우대 정책 마련	- 다자녀·중증장애인 경력채용 요건 완화 - 자녀 양육공무원 보직 우대
신규임용후보자 임용대기 장기화 대책 마련	- 신규임용후보자 임용의무화 -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강화
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제고	- 휴직자 결원보충 탄력성 제고
가정친화적 공직문화 조성	- 육아시간 확대 - 가족돌봄 휴가 확대 - <u>형제·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확대</u>
공무원 휴식보장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	- 저연차 공무원 연가 확대 -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

매의 경조사 휴가일수”를 1일→3일로 확대한 내용을 참고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.